

#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시행 2015.1.6.)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로 개정함  
(안 제4조제2호)
- 나. 종전의 「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삭제하도록 함(안 제4조7호)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부터 제18조 및 제2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2015.11. . ~ 2015.12. .) 결과,
- 3)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제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북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강북구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월15일이상인”을 “월15일 이상인”으로, “월15일미만인”을 “월15일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할구역 외에”를 “관할구역 외에”로, “업무외의”를 “업무 외의”로, “통산”을 “합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을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의 각호를”을 “별표 1의 각 호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  
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  
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  
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별  
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  
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  
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  
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 략)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  
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  
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  
정 별표 1에 의한"은 없는 것  
으로 본다.
4. 5. (생 략)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

-----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 보아 「공무원 여비 규  
정」-----  
별표 1-----.

②-----  
----- 별표 1의  
각 호를-----.

제4조(규정의 준용) -----  
-----  
-----  
----- 각 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  
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  
지 아니한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  
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  
다.
4. 5. (현행과 같음)
6. ----- "인사혁신  
처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별표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 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 「인사혁신처장 -----  
-----  
-----  
-----.

7. -----  
-----  
-----  
-----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관계법규 발췌문>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9., 2013.3.23., 2014.11.19.>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



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

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